

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

- 제정 : 2017. 8. 31.
- 개정 : 2018. 5. 31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에 근거하여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단” 이라 한다)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 및 지식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 및 범위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단의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.

제3조(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) ①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보안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보안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
3.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보안과제의 공개 및 대외 제공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분류기준) 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보안과제 :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,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
2. 일반과제 :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

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

8-0-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

- 2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- 3.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- 4.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
 - 가.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
 - 나.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 - 다. 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
 - 라.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
- 5. 국방·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
- 6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, 공고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7. 연구결과물이 대학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, 누설될 시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

③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. 단, 일반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분류절차)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 시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검토기준 표[별표1]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지원기관의 별도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으로 같음할 수 있다.

②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.

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보안등급)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연구책임자는 변경 내역,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.

제7조(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) ①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,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
2.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
3.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

②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외국인 참여 및 외국기관에 위탁연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 및 외국기관의 위탁연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과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·기관·단체의 방문·견학 등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협력 및 국제행사 등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참여연구원의 보안)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(별표2)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는 외국인의 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결과물 반출 및 대외 제공시 연구책임자는 보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⑤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, 이메일 등 네트워크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)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,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, 장소, 사고자 인적사항, 사고내용 등을 즉시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보안위원회 위원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8-0-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

제10조 (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)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은 물론 기간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제11조 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보안등급 분류 신청서

연구과제명	국문명					
	영문명					
지원기관		연구기간		총 연구비		
연구참여자 (총 명) *부족시 별지 작성	구분	소속	직위	성명	외국인 여부	연락처
	책임연구원					
	공동연구원1					
	공동연구원2					
	공동연구원3					
	연구보조원1					
	연구보조원2					
연구보조원3						
보안등급	1. 보안과제 2. 일반과제	근거	* 보안관리지침 제7조(기준)에 의거하여 작성			
	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과제여부	○, ×	보안등급	I, II, III급 비밀, 대외비 과제		
지식재산권 발생 여부	○, ×	지식재산권 형태				
과 제 요 약 문	※ 분량이 많을 경우 첨부물로 제출					
본인은 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고자 함에 따라, 과학기술부 훈령 제 238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본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 심의를 신청합니다.						
				20 년 월 일		
				연구책임자	인	
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						
붙임 1. 과제요약문 2. 보안서약서(보안과제일 경우)						

[별표2]

보안서약서(연구참여자용)

소속기관 :

직위 / 직급 :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상기 본인은 “ ”과제의
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○○○○○(지원기관)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2.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.
3.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,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.

년 월 일

서약인

(인)

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